

군포도시공사 제4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직제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



2022년 5월 3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89호

군포도시공사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호 중 ‘공영주차장’ 다음에 ‘군포시청 부설주차장’을 삽입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미 래 기 획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미 래 기 획 부 장 박 인 희
	담당자 성명 (전 화)	김 양 수 (3 9 0 - 7 6 1 4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교통관리부) 1. <u>공영주차장</u>, 버스공영차고지, 시외 버스정류소,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(이하 “교통관리시설”) 기본사업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. 2. ~ 10. (생략)	제16조(교통관리부) 1. -----, <u>군포시청 부설주차장</u>, ----- ----- -----. 2. ~ 10. (현행과 같음)